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호서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 대학원의 학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② 대학원 학칙과 이 시행규칙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2 (박사학위과정 설치 기준) ① 대학원 학칙 제2조의2에 따라 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확보해야 할 교원의 4분의 1 이상이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다음 각 호의 계열별 연구관련 실적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을 따른다.

1. 인문 · 사회계열 : 2편 이상
2. 자연과학 · 공학 · 의학계열 : 3편 이상
3. 예・체능 계열 : 1편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적 특성을 갖는 학과(부, 전공)와 학과간 협동과정의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학과의 계열과 관계없이 참여 교원의 교원업적평가 계열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기타 박사학위과정 신설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4. 8. 26]

제 2 장 입학 및 재・편입학

제3조 (입학전형) 대학원의 입학전형기본계획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4조 (입학전형 구분)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특별전형에 의한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일반전형에 지원자가 미달되었거나 시험성적이 합격점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인원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5조 (일반전형 방법) ① 석사과정의 일반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4. 21)

② 박사과정의 일반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4. 4. 21)

③ 특수·전문대학원 출신자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지원한 일반전형은 별도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또는 입학 후 사전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1. 26)

제6조 (특별전형 지원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전형에 지원 할 수 있다.

1. 국. 공・사립의 전문연구소 과장급 이상
2. 목사 안수 후 3년 이상 목회 경력자 (개정 2013. 3. 1)
3. 박사학위 취득자로 목사안수 후 3년이상 경과자 (신설 2013. 3. 1)
4. 산업체 및 산학연구소 5년 이상 실무 및 연구경력자

5.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7년 이상 초·중등교원 경력자
6. 5급이상 공무원
7. 연구능력이 뛰어난 자로서 학과교수(전원)의 추천을 받은 자
8. 위와 유사한 여타분야의 전문가
9. 산업체 인정여부는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 2호에 준하는 자 (신설 2014. 4. 21)

제7조 (특별전형 방법) ①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② 특수·전문대학원 출신자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지원한 특별전형은 별도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또는 입학 후 사전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1. 26)

제8조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9조 (지원서류) 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수험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나. 대학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또는 학력 인정서
   다. 대학 전학년 성적 증명서
   라. 재직 및 경력 증명서(특별전형 자에 한함)
   마.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4㎝) 2매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졸업예정 증명서)
   다.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라. 재직 및 경력 증명서(특별 전형자에 한함)
   마. 사진(최근 3개원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4㎝) 2매

제10조 (시험과목) 대학원 입학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4. 4. 21>
2. <삭제 2014. 4. 21>
3. 서류심사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입학할 공식적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 (신설 2014. 4. 21)
4. 면접 : 학술연구의 능력과 적성, 인성, 지원학과(또는 전공)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등을 심사한다.(호 변경, 개정 2014. 4. 21)

제11조 (편입학 지원자격) ①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전공분야의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자 (개정 2013. 3. 1)
2.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전공분야의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 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자 (개정 2013. 3. 1)

②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편입전 대학원에서의 정규등록 학기 수와 이수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지 원 자 격	
		정규등록학기수	이 수 학 점
석사과정	2	1학기 이상	6학점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이상
박사과정	2	1학기 이상	6학점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이상
	4	3학기 이상	18학점이상

제12조 (편입학 전형방법)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의거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편입학 지원서류)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나. 대학 졸업증명서 1 통
   다.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 통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나.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1 통
   다. 대학, 대학원 석사 및 대학원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각 1 통

제14조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편입전 대학원의 학점은 편입학생의 입학전에 해당학과 교수회의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석 사 과 정		박 사 과 정	
편입학기	학점인정	편입학기	학점인정
2	6	2	6
3	12	3	12
		4	18

제15조 (편입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편입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우리 대학원에 편입학 한 학기에 따라 적용 받는다.

제16조 (재입학)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정원의 여석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③ 재입학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신설 2022. 2. 14)

제17조 (합격자의 결정과 합격 통지서) 대학원장은 입학 또는 재·편입학 사정자료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며,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 후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에게 합격 통지서를 발부한다.

제18조 (입학등록)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통지서를 받은 입학자와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는 소정 기일 내에 정해진 납입금을 납부하여 입학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입학 등록을 마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 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

제 3 장 교과과정 및 수업

제19조 (교과과정의 편성과 이수학점)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다음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14, 2019.10.28)

교 과 목 구 분	석 사 과 정	연 계 과 정	박 사 과 정	석·박사통합과정
공통(필수,선택)과목	6학점 이상	6학점 이상	6학점 이상	6학점 이상
전공(필수,선택)과목	12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추가이수	학부에서 9-12학점		학부에서 9-12학점	학부에서 9-12학점

② 대학원 공통필수인 논문작성법을 포함하여 공통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규정한 공통과목의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원 학칙 제17조 제2항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9. 5. 14)

③ 주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통합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공통과목 이수학점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5. 14)

④ 한 학과 내의 다수 전공들은 졸업학점의 25%를 공통과목으로 운영해야 한다.(신설 2020. 3. 1)

제20조 (교과목의 학점 수) 대학원에서 설강하는 각 교과목의 학점 수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교과목의 설정과 변경) ① 주임교수는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과목을 설정하고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대학원통합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 5. 14)

② 학과에 따라서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과목을 공동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③ 설정된 교과목의 변경은 주임교수가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기 6개월 이전에 이를 대학원통합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 5. 14)

제22조 (논문지도과목)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논문연구를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논문지도과목의 학점은 없으며, 이수여부를 합격(P) 또는 불합격(NP)으로 평가한다.

제23조 <삭제 2018. 6. 15>

제24조 (교과목의 개설) 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매 학기 개설할 교과목을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선정하고 이를 개강일 2개월 이전에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개설 교과목수와 수강 학생 수) ① 학과별 석사과정 및 연계과정,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전체 재학생 수에 따라 학과별로 매 학기 최대로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수와 학점 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부득이하게 최대 개설 가능 교과목 수를 초과하여 개설하여야 할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1. 13, 2014. 4. 21. 2018. 12. 12, 2019.10.28., 2023. 8. 11.)

재학생수	5명이하	6~10명	11~20명	21~30명	31~50명	51명 이상
교과목수	4	5	6	7	8	9
학 점 수	12	15	18	21	24	27

② 개설된 교과목은 수강생이 3명 이상인 경우에 강의개설을 허용한다. 다만, 수강생이 3명 미만으로 강의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12, 2020. 3. 1., 2021. 9. 15.)

③ (신설 2020. 3. 1., 삭제 2021. 9. 15.)

제26조 (수업계획서) 각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기 개강일 1개월 이전에 이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학생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제27조 (강사제청) 각 학과 주임교수는 교과운영상 강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강일 2개월 이전에 시간강사 제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수강 신청 및 변경)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 과목을 정하고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개강일 1주일 이전에 이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3주일 이내에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변경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 2 (학점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대학원 학칙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학원 신학과(연합신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중 본교에서 진행하는 성지현장세미나에 참여하여 수강한 자가 “성지성서연구 현장세미나”교과목 수강을 신청한 경우

제28조의 3 (수강신청 제한)

1.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해당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하며, 이에 따른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9. 15. 개정 2022. 2. 14.)

제29조 (성적 평가표 제출) ① 각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기말시험 종료 후 소정기일 이내에 성적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성적산출근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담당교수는 성적을 산출한 근거(시험답안지, 과제물, 출석부 등)를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간강사는 성적을 산출한 근거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1]

제29조의 2 (수업반응도) 각 학위과정에 있는 모든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에 대해서는 매 학기 수업반응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

제30조 <삭제 2018. 3. 1>

제31조 (타 학과 교과목의 수강)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타 학과의 교과목을 전공학과의 전공 선택 과목으로 석사과정은 12학점까지,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통합과정은 30학점까지 이를 수강 할 수 있다. 다만, 학문 성격이 유사한 학과간에 주임교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개설한 교과목은 전공학과의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3. 11. 13, 2020. 3. 1, 2024. 8. 26)

제32조 (학사과정자의 대학원 수강) ① 학사과정에서 5학기 9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하기 직전 정규학기의 성적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는 대학원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한 학기에 3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위의 학생이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이를 석사과정에 이수학점으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 3. 1)

제33조 (석사과정자의 학사과정 교과목 이수) 석사과정의 학생은 학사과정의 전공Ⅱ단계에서 이수하지 않는 교과목을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이수 할 수 있으며, 이를 석사과정의 전공 선택 학점으로 6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제34조 (타 대학원의 학점 인정)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소속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문 성격이 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호서대학교 소속 타 대학원 개설 교과목을 전공학과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석사과정은 12학점까지,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통합과정은 30학점까지 수

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신학과의 경우에는 연합신학전문대학원에서 수강한 교과목에 한하여 학위수여 자격 요건의 1/2(18학점) 범위 내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삭제 2012.3.1, 신설 2013. 3. 1, 개정 2013. 11. 13, 2018. 6. 15, 2020. 3. 1, 2024. 8. 26)

제35조 (수료학기의 인정기준)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기를 인정하는 기준은 정규등록 학기 수와 수료학기말 시점의 이수 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 분	석 사 과 정				박 사 과 정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정규등록 학기수	1학기 이상	2학기 이상	3학기 이상	4학기 이상	1학기 이상	2학기 이상	3학기 이상	4학기 이상	5학기 이상	6학기 이상
이수학점	6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6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제35조2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①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②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학습자료 제공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

[본조신설 2024. 8. 26]

제 4 장 학 위 수 여

제 1 절 학위청구 자격시험

제36조 (시험과목) 학위청구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제37조 (외국어 시험과목) ①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전공영어를 시험과목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은 전공영어시험을 한국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2. 3. 1, 2013. 3. 1, 2014. 4. 21., 2020. 9. 8.)

②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한 자 중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와 본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영어트랙으로 입학한 유학생은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공인어학 성적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 3. 1, 2013. 8. 26, 2014. 4. 21., 2020. 9. 8, 2024. 1. 31)

③ <삭제 2014. 4. 21>

제38조 (종합시험의 시험과목) ① 석사과정 및 연계과정의 학생은 3과목의 석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개정 2019.10.28)

②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학생은 4과목의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개정 2013. 11. 13)

③ 과목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재입학생을 포함한다)의 경우,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

제39조 <삭제 2018. 3. 1>

제40조 (응시절차)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 교학팀에 응시원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

제41조 (시험일자) 매 학기 중에 실시하며, 시험실시 2주전에 공고한다.

제42조 (출제 위원) 대학원장은 제37조 및 38조 각 과정, 각 과목의 출제와 채점을 해당 교수에게 위촉한다.(개정 2013. 3. 1)

제43조 (출제 범위)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어 시험 : 전공영어를 실시하며, 전공영어 능력이 해당분야의 연구수행에 적합한지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과 범위내에서 출제한다. (개정 2014. 4. 21)

2. 종합시험 :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44조 (배점 및 합격기준) ① 외국어시험에서 전공영어는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4. 4. 21)

②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45조(합격자 발표)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결과는 대학원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며, 대학원장은 합격여부를 확정하고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46조 (재시험) ①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 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교과목 변경이 가능하다.

③ 재시험은 다음 학기부터 가능하다. 다만, 최종 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8. 6. 15]

제 2 절 학위청구논문과 심사

제47조 (학위청구논문의 구비사항) 학위청구논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8. 26)

1. 표제지(소정의 규격)
2. 학위논문합격인준서 (개정 2014. 4. 21)
3. 연구윤리서약서 (개정 2014. 4. 21)
4. 목차 (호 변경 2014. 4. 21)
5. 본문 (호 변경 2014. 4. 21)
6. 영문초록(논문 뒷면에 부착) (호 변경 2014. 4. 21)
7. 부록(필요한 경우) (호 변경 2014. 4. 21)
8. 참고문헌 (호 변경 2014. 4. 21)

제47조의2 (학위청구논문의 대체방법) ①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중 「대학원 학칙」제25조의2에 따른 학위청구논문을 실기발표, 실적심사 또는 대체학점 이수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논문대체”라 한다. 이하 같다) 논문대체 시행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8. 26)

② 실기발표 또는 실적심사 등으로 논문대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되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정하여, 반드시 학과(전공) 전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6)

1. 학위논문 대체 신청서
2. 학위청구논문을 대체하는 연구결과물(이하 “논문대체물”이라 한다)의 명칭
3. 논문대체 목적 및 기대효과
4. 제1호에 따른 심사방법(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 정족수-최소 3명 이상, 심사의 판정 등)
5.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요지와 심사 결과보고서

③ 대체학점이수로 논문대체를 할 경우 전공과목 중에서 2과목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6)

1. <삭제 2024. 8. 26>
2. <삭제 2024. 8. 26>

④ <삭제 2024. 8. 26>

⑤ <삭제 2024. 8. 26>

[본조신설 2018. 3. 1]

제48조 (학위청구논문의 체제와 양식) 학위청구논문의 체제와 규격 및 양식과 분량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49조 (학위청구논문의 작성용어) 학위청구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된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을 외국어로 작성 할 때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한국어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기) ①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과 11월로 한다. (개정 2012. 3. 1)

② 학위논문 인쇄본의 제출시기는 7월과 1월로 한다. (개정 2012. 3. 1)

제51조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한) 학위청구논문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이내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1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3, 2014. 4. 21, 2015. 1. 26)

제52조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부수와 절차)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상자는 학위청구 최종심사가 종료된 후 규격에 맞게 작성한 후, 최종논문 파일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1, 2019. 5. 14., 2023. 2. 6.)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3조 (학위청구논문 접수의 부결) <삭제 2014. 4. 21>

제54조 (논문심사위원의 자격과 위촉) ① 논문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련분야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논문심사기간 중 국내에 체류가 불가능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 3. 1, 2012. 3. 1, 2014. 4. 21, 2018. 3. 1., 2021. 9. 15.)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5인으로 한다. (개정 2011. 3. 1)

③ 논문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제55조 (논문심사위원장) 대학원장은 제54조의 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거나 위원의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선정하게 하여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사에 있어서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56조 (논문심사위원의 교체)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 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 할 수 있다.

제57조 (논문심사 회수와 공개구술시험)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에는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여 논문을 수정·보완하게 하며, 2차로 논문내용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공개 구술시험을 과한다.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3차 이상으로 하되,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고, 2차로 논문내용의 발표를 통하여 논문을 수정·보완하게 하며, 3차로 논문요지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공개 구술시험을 과한다.

제58조 (논문심사자료의 제출) 심사위원이 학위청구논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게 인용한 문헌이나 그 번역본, 참고 될 문헌, 도형, 표본,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 (심사위원의 정족수) 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는 부득이한 경우 재적위원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심사 할 수 있다.

제60조 (논문심사의 기간과 기간 연장)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개시 일로부터 각각 1개월과 2개월 이내에 논문심사와 공개 구술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청구논문의 수정·보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심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61조 (논문심사의 판정) 학위청구논문과 공개구술시험에 대한 심사위원의 개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석사학위청구 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의 통과를 판정한다.

제62조 (논문심사의 결과보고) ①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사요지와 심사결과 보고서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 (학위수여 사정)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자격을 갖춘 학위청구 학생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개정 2023. 8. 11.)

[조 이동 2023. 8. 11..]

제 3 절 학 위 수 여

제64조 (학위수여 자격) ① 학칙 제63조에 의한 학위수여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1, 2018. 3. 1, 2023. 8. 11.)

1. 석사학위과정
   가.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다만, 이공계 학생의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 과목을 Pass 하여야 함. (이공계열의 범위는 교육 주관기관 규정을 따름.) (개정 2010. 3. 1)
   나. 취득학점의 총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다.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논문연구계획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서 2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다만, 논문대체자의 경우에는 논문 연구지도 면제(개정 2018. 3. 1)
   마.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신설 2014. 4. 21, 개정 2020. 3. 1)
   바. <삭제 2015. 4. 22>
   사. 논문심사 및 최종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논문 표절검사 확인서를 제출한 자. 다만, 논문대체자는 소정의 심사에 합격한 자 (호 변경, 개정 2014. 4. 21, 2018. 3. 1, 2023. 8. 11.)
   아. 수료 후 논문대체학기에 6학점을 이수한 자(신설 2023. 2. 6.)
2. 박사학위과정
   가. 36학점(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제외) 이상 취득한 자. 다만, 이공계 학생의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 과목을 Pass 하여야 함. (이공계열의 범위는 교육 주관기관 규정을 따름.) (개정 2010. 3. 1)
   나. 취득학점의 총 평점 평균이 3.0이상인 자.
   다.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5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논문연구계획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서 3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개정 2018. 3. 1)
   마.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신설 2014. 4. 21, 개정 2020. 3. 1)
   바. 학위논문의 주제가 생명윤리와 관련된 경우,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해당자에 한함) (신설 2014. 4. 21, 개정 2015. 4. 22)
   사. 논문심사 및 최종 구두시험에 합격하고 눈문 표절검사 확인서를 제출한 자. (호 변경 2014. 4. 21, 개정 2023. 8. 11.)

3. 석・박사통합과정(석사학위) (신설 2013. 11. 13)
   가. 4개 학기 이상 등록
   나. 33학점(박사과정 교과목 9학점 포함) 이상 취득한 자. 다만, 이공계 학생의 경우, '연구실안전관리' 과목을 Pass 하여야 함.(이공계열의 범위는 교육 주관기관 규정을 따름)
   다.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라. 석사학위 취득할 때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석사학위논문 작성 면제
4. 석・박사통합과정(박사학위) (신설 2013. 11. 13)
   가. 60학점(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포함) 이상 취득한 자. 다만, 이공계 학생의 경우, '연구실안전관리' 과목을 Pass 하여야 함.(이공계열의 범위는 교육 주관기관 규정을 따름)
   나.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다.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9학기 이상 등록하고 논문연구계획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서 3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개정 2018. 3. 1)
   마.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신설 2014. 4. 21, 개정 2020. 3. 1)
   바. 학위논문의 주제가 생명윤리와 관련된 경우,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해당자에 한함) (신설 2014. 4. 21, 개정 2015. 4. 22.)
   사. 논문심사 및 최종 구두시험에 합격하고 논문 표절검사 확인서를 제출한 자 (호 변경 2014. 4. 21, 개정 2023. 8. 11.)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학칙 제10조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에 해당하는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단, 연계과정생은 제외한다. (신설 2018. 3. 1, 개정 2019.10.28., 2023. 8. 11.)

1. 석사학위과정
   가. 총 취득학점이 27학점 이상인 자
   나. 취득학점의 평점 평균이 4.3 이상인 자
2. 박사학위과정
   가. 총 취득학점이 39학점 이상인 자
   나. 취득학점의 평점 평균이 4.3 이상인 자
3. 석·박사 통합과정
   가. 총 취득학점이 66학점 이상인 자
   나. 취득학점의 평점 평균이 4.3 이상인 자

제65조 (학위수여의 확정) ① 대학원위원회는 학위 수여자 사정을 통해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대학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학위 수여를 확정한다. (개정 2023. 8. 11.)

②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자 사정 이전에 논문심사 결과를 변경해야 할 경우, 논문심사위원장은 지체없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논문심사 결과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논문 심사위원 전원의 찬성과 학위 청구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23. 8. 11.)

③ 학위수여 이후에 논문심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제71조와 제71조의2에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 8. 11.)

[조 이동 2023. 8. 11.]

제66조 (학위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별표 1>과 같이 과정별 및 학과별 명칭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2. 3. 1, 2014. 3. 1, 2015. 4. 22, 2016. 8. 1, 2017. 9. 1, 2018. 3. 1, 2018. 6. 15, 2018. 12. 12, 2019. 5. 14, 2019. 8. 29,

2019.10.28., 2020. 1. 28, 2020.08.12., 2021. 9. 15, 2022. 2. 8., 2022. 8. 25., 2023. 2. 6., 2023. 8. 11, 2024. 1. 31)

제67조 (학위수여 시기 및 회수) 학위수여 시기는 년 2회로 한다.

제68조 (학위기) 석사학위는 별지 제1호(논문이 있는 경우)·제1호의 1(논문이 없는 경우)·제1호의 2(영문) 서식에 의하고, 박사학위는 별지 제2호(일반과정)·제2호의 1(석·박사학위 통합과정)·제2호의 2(영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총장이 수여한다.(개정 2018. 12. 12)

제69조 (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0조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절차에 따라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수여의결을 확정한다.
2.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은 대학원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3. 명예박사 학위수여 종별은 제66조의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되 그 구분은 이를 받을 자의 공적의 성질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명예박사 학위는 본 대학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이를 수여할 수 있다.
5. 명예박사 학위는 별지 제3호(영문 제3호의 1)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8. 12. 12)

제71조 (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71조의 2 (연구부정 행위가 밝혀질 경우 지도교수 및 지도학생에 대한 조치) 호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의해 지도학생의 연구부정 행위가 밝혀질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교수 또는 지도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8, 개정 2015. 1. 26, 2024. 1. 31)

제 5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및 퇴학

제72조 (등록)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교과목 이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논문연구와 실험, 학위논문작성 등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을 정규등록이라 한다.(개정 2019. 5. 14)

② 수강신청학점 수에 따라 정규등록금의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을 학점등록이라 한다.(개정 2019. 5. 14)

③ <삭제 2018. 3. 1>

④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논문준비 등을 위하여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을 연구등록이라 한다.(신설 2019. 5. 14)

제72조의 2 (수업료 등의 반환)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중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12. 3. 1, 개정 2017. 9. 1)

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2.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제72조의 3 (연구등록) ① 대학원생은 수료 후 논문심사를 진행하는 학기에 한하여 소정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14, 개정 2023. 8. 11.)

② 연구등록금은 연구관리비용을 산정하여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3. 8. 11.)

제73조 (학기 당 이수학점 초과 수강자의 등록) 학기 당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학생은 정규 등록금의 2분의 1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

제74조 (수업연한 초과자의 학점등록) 수업연한을 초과하였으나 미수료인 상태에서 교과목을 신청하는 학생은 신청학점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14)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 : 해당 학기 수업료 전액

제75조 (등록절차) 학생은 대학원 교학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교부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지정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 (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 : 질병, 사고, 가정 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휴학
2. 군 입대 휴학 : 교육소집 또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기 위한 휴학

제77조 (휴학절차) ①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해당기간 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② 군 입대 휴학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 휴학 중 군에 입대할 경우 다시 군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 (휴학생의 등록금 대체) ①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휴학한 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2. 3. 1)

② 개강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일반휴학한 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라 산출된 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복학 시 추가납부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1호에 준한다. (개정 2012. 3. 1)

1. 수업일수 1/3 이전 휴학자 : 등록금의 1/3 납부
2. 수업일수 1/3 초과 1/2 이하 휴학자 : 등록금의 1/2 납부
3. 수업일수 1/2 초과자 : 등록금 전액 납부

제79조 (복학) ① 일반 휴학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소정기일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6)

② 군 입대 휴학 자는 전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정기일 내 복학하여야 하며, 개강 후 4주 이내에 전역예정자에게도 복학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6)

제80조 <삭제 2015.12.23>

제 6 장 주임교수와 지도교수(개정 2017. 9. 1)

제81조 (주임교수의 직무) 주임교수는 해당학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과목 설정과 변경 및 설강, 지도교수의 제청, 기타 해당학과의 각종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제82조 (주임교수의 임명) ① 각 학과의 주임교수는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 12. 12)

②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83조 (지도교수의 위촉 등) ① 각 학위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학생의 입학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임교수의 제청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1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2.3.1., 개정 2024. 1. 31)

③ 한 학기에 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석사학위과정은 6인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4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3. 8. 26)

제84조 (지도교수의 자격) ① 각 학위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의 전임교수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계의 권위자 및 외부인사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예·체능계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로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3, 2014. 4. 21., 2021. 9. 15, 2024. 1. 31)

② 학생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교원일 경우에 지도교수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교원으로 당해 학생과 동급 이상인 자로 한다.

③ 3년 이내(석사지도의 경우 2년 이내)에 퇴직하는 교수는 지도교수를 맡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사정에 따라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 퇴직예정교원도 지도교수를 맡을 수 있으며, 이 때 반드시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해야 한다. (신설 2012.3.1., 개정 2024. 1. 31)

④ 공동지도교수는 제84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교내 전임교원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특임(석좌)교수, 타 대학교수 및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를 위촉해야 한다. (신설 2024. 1. 31)

제85조 (지도교수의 직무) 지도교수는 해당학생의 수강신청을 포함하여 학사 및 학업을 지도하고 논문연구와 실험 및 학위논문의 작성을 지도한다.

제86조 (지도교수의 변경) 지도교수가 치병, 장기해외출장이거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어려울 때에는 주임교수가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 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7조 <삭제 2017. 9. 1>

제88조 <삭제 2017. 9. 1>

제89조 (논문계획서) ① 학위청구논문의 연구와 지도를 위하여 석사과정 학생은 3학기 박사과정 학생은 4학기, 통합과정 학생은 6학기까지 석·박사학위 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 11. 13, 2014. 4. 21)

② 지도교수는 담당학생의 석·박사학위 논문계획서를 심사하고 수정・보완하게 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개정 2014. 4. 21)

③ 생명윤리와 관련된 주제일 경우, 박사과정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논문계획서를 호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생명과학기술 연구의 범위는「호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을 따름) (신설 2014. 4. 21, 개정 2015. 4. 22)

③ 석·박사학위 논문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석·박사학위 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심사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 변경, 개정 2014. 4. 21)

제 7 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 1 절 연 구 과 정

제90조 (연구과정) 연구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일반연구생과 수료후연구생을 둘 수 있다.(개정 2016. 9. 1)

제91조 <삭제 2016. 9. 1>

제92조 (신청서류 및 절차) ① 연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2018. 12. 12)

② 학과 주임교수는 신청자격을 심사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신설 2016. 9. 1)

[제목변경 2016. 9. 1]

제93조 <삭제 2016. 9. 1>

제94조 (재학연한) 연구과정의 재학 연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 2학기로 구분한다. 다만,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수료후연구생 경우에는 연구기간 만료일까지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9. 1, 2017. 9. 1)

[제목변경 2016. 9. 1]

제95조 (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1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96조 (복학, 재입학) ① 연구과정생은 이수한 동일학기에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개정 2016. 9. 1)

② 일반연구생의 경우 교과과정표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1)

③ 수료후연구생은 전일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하에 선택적으로 학점취득이 가능하다.(신설 2016. 9. 1)

제97조 (제적) 연구과정생이 자격미달 혹은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일로 물의를 일으킬 때는 한시라도 대학원장은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제98조 (연구생등록금) ① 연구과정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2023. 8. 11.)

- 일반연구생 :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2
- 수료후연구생 : 해당 학기 수업료의 5% (개정 2011. 3. 1, 2016. 9. 1)

② 연구과정생 수료 후 본교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 입학금은 면제한다.(개정 2016. 9. 1, 2023. 8. 11.)

[제목변경 2016. 9. 1]

제99조 (수료학점) 연구과정생은 매 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며, 연 12학점으로 한다. 단, 수료후연구생이 전일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별도 학점취득없이 수료후연구생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개정 2016. 9. 1)

제100조 (학점인정) <삭제 2013. 3. 1>

제101조 (연구실적 증명서) 연구과정생으로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2)

제102조 <삭제 2016. 9. 1>

제 2 절 공 개 강 좌

제103조 (공개강좌) 대학원은 교과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강좌를 열 수 있다.

제104조 (공개강좌의 개강)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과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 이를 결정하여 대학원장이 공고한다.

제105조 (공개강좌 수료증) 공개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 8 장 <삭제 2017. 9. 1>

제106조 <삭제 2017. 9. 1>
제107조 <삭제 2017. 9. 1>
제108조 <삭제 2017. 9. 1>
제109조 <삭제 2017. 9. 1>
제110조 <삭제 2017. 9. 1>
제111조 <삭제 2017. 9. 1>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시행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학칙시행규정', '학위수여규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는 폐지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3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5년 4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23)

① **(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시행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66조의 경우 201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시행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시행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시행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사학위과정 학위수여 자격에 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칙은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박사통합과정 학위수여 자격에 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칙은 2018학년도 1학기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박사학위과정 재학생의 학위수여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재·편)입학한 박사과정 학생은 제64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의 학위수여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제64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8. 6. 15)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12)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66조의 개정규정 중 변경된 인재개발학과 학위종별은 이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졸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개정 전 규정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 칙(2019. 5. 14)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통교과목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공통교과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논문작성법 수강을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연구등록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72조 및 제72조의3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연구등록금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8. 29)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28)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0조의 경우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 28)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12.)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8.)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9.15.)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2.08.)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6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학위 종별은 이 시행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졸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개정 전 규정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부 칙(2022.02.14.)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25.)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6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학위 종별은 이 시행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졸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개정 전 규정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부 칙(2023. 2. 6.)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료 후 논문대체학기 적용예)** 제64조제1항제1호 아목의 신설규칙은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수료한 경우 학위논문대체 신청서를 제출하고

논문대체학기에 추가 등록하여 6학점을 이수한 자에게 적용한다.

③(**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6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학위 종별은 이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졸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개정 전 규정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부 칙(2023. 8. 11.)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6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학위 종별은 이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졸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개정 전 규정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부 칙(2024. 1. 31.)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26.)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① 제2조의2의 박사학위과정 설치 기준은 202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2의 석사학위청구논문의 대체 방법은 2025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개정 2016. 8. 1, 2017. 9. 1, 2018. 3. 1, 2018. 6. 15, 2018.12.12, 2019. 5. 14, 2019. 8. 29, 2019.10.28., 2020. 1. 28, 2020.08.12., 2021. 9. 15., 2022. 2. 8., 2022. 8. 25., 2023. 2. 6., 2023. 8. 11., 2024. 1. 31)

일반대학원 학위종별표(제66조 관련)

계열	학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인문사회계열	신학과	-	철학박사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국어국문학과(한국어교육전공)	문학석사(한국어교육전공)	문학박사(한국어교육전공)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전공)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박사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전공)	노인복지학석사	노인복지학박사
	청소년문화.상담학과	문학석사	-
	인재개발학과	-	교육학박사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산업심리학과	심리학석사	심리학박사
	디지털기술경영학과	기술경영학석사	기술경영학박사
	한중문화콘텐츠학과	문화콘텐츠학석사	문화콘텐츠학박사
	미래산업융복합학과	미래산업융복합학석사	미래산업융복합학박사
	지속가능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스마트헬스케어경영학과	스마트헬스케어경영학석사	스마트헬스케어경영학박사
		간호학석사	간호학박사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물리치료학석사	물리치료학박사
	부동산자산관리학과	부동산학석사	-
	지역공공경영학과	지역공공경영학석사	-
	사회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이학계열	수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생명공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식품생물공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응용통계학과	통계학석사	통계학박사
	화장품과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바이오응용독성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제약공학과	이학석사	-
	물리치료학과	이학석사	-
	임상병리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간호학박사
	바이오융합시스템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데이터사이언스석사 (응용통계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박사 (응용통계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석사 (산업경영공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박사 (산업경영공학전공)
	동물보건복지학과	이학석사	-

계열	학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공학계열	전기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정보제어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해양융합기술학과	공학석사	-
	게임학과	게임학석사	게임학박사
	정보보호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안전행정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환경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신소재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화학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그린에너지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소방방재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로봇자동화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자동차ICT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나노융합기술학과(계약학과)	융합학석사(독성학전공)	융합학박사(독성학전공)
		융합학석사(약리독성전공)	융합학박사(약리독성전공)
		융합학석사(나노소재전공)	융합학박사(나노소재전공)
	수소에너지안전기술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에너지기후환경융합기술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안전환경기술융합학과	공학석사	-
	융합기술경영학과	공학석사(융합기술경영전공)	
	나노바이오트로닉스학과	융합학석사(메카트로닉스전공)	-
		융합학석사(바이오나노전공)	-
		융합학석사(신소재·환경전공)	-
		융합학석사(기술경영전공)	-
	재난안전시스템학과	공학석사(건축공학전공)	공학박사(건축공학전공)
		공학석사(토목공학전공)	공학박사(토목공학전공)
		공학석사(컴퓨터공학전공)	공학박사(컴퓨터공학전공)
	지능형친환경자동차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AI스마트팩토리 융합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AI콘텐츠융합학과	AI콘텐츠융합학석사	AI콘텐츠융합학박사
	반도체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중대재해예방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전자재료공학과	공학석사	-
예체능계열	음악학과	음악학석사	-
	공간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
	연극학과	문학석사	-
	애니메이션학과	애니메이션학석사	-
	조형융합예술학과	-	예술학박사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골프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문화예술학과	예술학석사	예술학박사
		음악학석사 (음악학전공)	음악학박사 (음악학전공)
		음악석사 (연주학전공)	음악박사 (연주학전공)
	스포츠재활트레이닝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 2024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

<별표 2>(신설 2018. 3. 1, 2018.12.12., 2019.10.28., 2021. 9. 15., 2023. 8. 11., 2024. 8. 26.)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제47조의2 제1항 관련)

종별구분	세부내용	비고
실기발표	학위연주회 및 Lecture Recital	
실적심사	산·학공동 프로젝트 보고서, 연구보고서	
연구논문게재	연구재단 등재지, SCOPUS, SCI 및 SCIE	
학위작품	학위작품(작품제작보고서 포함) 제작·발표	
실적발표	교육 및 창작콘텐츠	
논문대체 학점이수	전공 과목 중에서 2과목 추가 이수	

[별지 **제1호** 서식]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이 있는 경우)(개정 2018. 12. 12)

석 제 0000 호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 학과(○○○전공)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대학원장 학 위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석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학 위 ○ ○ ○(인)

학위번호 : 호서대 ○○○○(석)○○○

[별지 **제1호의 1** 서식]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이 없는 경우)(개정 2018. 12. 12)

석 제 0000 호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 학과(○○○전공)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대학원장 학 위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석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학 위 ○ ○ ○(인)

학위번호 : 호서대 ○○○○(석)○○○

[별지 제1호의 2 서식]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영문학위기(개정 2018. 12. 12)

HOSEO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Faculty
has conferred upon

○ ○ ○

the degree of
Master of ○○○
in ○○○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obligation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the Graduate School, Hoseo University,
this ○○ day of ○○, ○○○○

○○○	○○○
Dean, Graduate School	**President of the University**

[별지 **제2호** 서식]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학위기**(개정 2018. 12. 12)

박 제 0000 호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 학과(○○○전공)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대학원장 학 위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박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학 위 ○ ○ ○(인)

학위번호 : 호서대 ○○○○(박)○○○

[별지 **제2호의 1** 서식]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위기**(개정 2018. 12. 12)

박 제 0000 호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 학과(○○○전공) 석 · 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대학원장 학 위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박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학 위 ○ ○ ○(인)

학위번호 : 호서대 ○○○○(박)○○○

[별지 제2호의 2 서식]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영문학위기(개정 2018. 12. 12)

HOSEO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Faculty
has conferred upon

○ ○ ○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obligation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the Graduate School, Hoseo University,
this ○○ day of ○○, ○○○○

○○○	○○○
Dean, Graduate School	**President of the University**

[별지 **제3호** 서식] **일반대학원 명예박사과정 학위기**(개정 2018. 12. 12)

명박 제 000 호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 ○ ○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이에 추천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대학원장 학 위 ○ ○ ○(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 ○ ○ 박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학 위 ○ ○ ○(인)

학위번호 : 호서대 ○○○○(명박)○○○

[별지 제3호의 1 서식] 일반대학원 명예박사과정 영문학위기(개정 2018. 12. 12)

HOSEO UNIVERSITY

By the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School council,

we hearby confer upon

○ ○ ○

the degree of

Honorary Doctorate in ○○○

with all the honors, rights, and privileges

thereunto pertaining on this

○○ day of ○○, ○○○○

○○○	○○○
Dean, Graduate School	**President of the University**

Degree Issued No. HU ○○○○(H.D.)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16. 9. 1, 2018. 12. 12)

연구생 신청서 (일반연구생□ · 수료후연구생□)

소 속	_____ 대학원 _____학과 (석사·박사)과정
성 명	
학 번	
수료일자	

상기 본인은 본교 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제92조에 의거, 대학원 연구과정생으로 신청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주 소 :
(우편번호) ☎ :

확인자
지도교수 : (인)

주임교수 : (인)

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8. 12. 12)

제　　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 석사, 박사 학위과정에서　　년　　월간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대학원장 000박사 0 0 0 (인)